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p.63~94
한국세무학회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고운성*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차이의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세무조정 항목 중 어떠한 세무조정 항목을 주로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하는가를 파악하고, 해당 개별 세무조정 항목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의 경우 일시적 가산조정 빈도와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산조정을 많이 함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부채비율간의 관련성은 검증할 수 없었다. 둘째, 자본집약도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가산 조정빈도와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본집약도가 높을 경우 감가상각비의 인식 및 조세혜택 등을 이용하여 세금비용을 증가시키는 가산조정을 억제하여 세금비용을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익성변수인 ROA와 가산조정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차감조정과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법인세 유연화 동기에 따라 수익성이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소유집중도, 사외이사비율, 그리고 BIG4소속 감사인 여부는 기업특성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주제어>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 차감조정, 기업특성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전임강사, max0907@kyonggi.ac.kr, 016-545-8800

논문접수일 2007년 7월

게재확정일 2008년 1월

I. 서 론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게 되나, 실제로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상의 적용 기준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동일하다면 세무조정이란 과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그 존재의 목적¹⁾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이 두 기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존재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은 크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 항목에는 일시적인 항목과 영구적인 항목이 있다. 일시적인 항목의 경우 당기의 소득처분의 효과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소득처분으로 상쇄됨으로써 총 조세부담은 동일하게 된다. 하지만 영구적 차이의 경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영구적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의 경우 영구적으로 조세부담을 지거나, 조세비용을 영구히 절감하게 된다.

합리적인 경영자를 가정할 경우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비용을 가급적 감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는 Scholes et al.(2001)이 주장한 것과 같이 무조건 세금비용만을 최소화하지 않고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상황에 따라서 특정연도의 과세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는 세무전략을 통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자는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이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와 영구적인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총 세금비용에 차이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 항목과 영구적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동기 역시 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또한 영구적 차이의 경우 일시적인 차이와는 달리 경영자의 재량권의 행사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실제 세무조정 자료에 기초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차이의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세무조정 항목 중 어떠한 세무조정 항목을 주로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하는가를 파악하고, 해당 개별 세무조정 항목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상당수의 선행연구는 세무조정 자료의 입수 상에 한계점으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통하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하였고,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한 몇몇 연구 역시도 매우 제한적인 표본기간만을 사용하여 실증

1)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고, 국가경제를 원활히 함에 있어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 등의 단일변량분석만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교적 최근의 자료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장기업의 개별 세무조정사항을 확인하고, 로짓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기업특성과 세무조정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무조정에 관한 연구를 향후 진행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세무조정과 기업특성의 관련성을 논한다. 제Ⅳ장에서는 표본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세무조정사항 및 선행연구

1. 세무조정사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은 크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산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조정이고, 차감조정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이다. 또한 세무조정 항목에는 일시적인 항목과 영구적인 항목이 있다. 일시적인 항목의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처분이 유보로 처리되는 것으로써 당기의 소득처분의 효과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소득처분으로 상쇄된다. 또한 영구적 차이의 경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세무조정은 매우 복잡한 조정을 행하게 된다. 제Ⅱ장에서는 기업이 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개별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자산관련 항목, 부채관련 항목, 그리고 공통/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사항을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무조정 사항

분류	계정과목별	상 황	세무조정
유가증권	유가증권	시가 평가 시	손실(이익)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
	지분법 적용주식	1) 배당금 수령 시	투자유가증권 상계 분 익금산입
		2) 지분법평가손익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이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장기 투자증권	시가 평가 시	자본조정이 함께 발생하므로 유보와 기타가 같이 발생하므로 손익에 영향 없음

〈표 1〉 세무조정 사항(계속)

분류	계정과목별	상 황	세무조정
채고 자산	채고자산	1) 매출원가 계상 시 세무상 신고방법과 회계상 평가방법과의 차이로 발생시	차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조정 모두 발생 가능
		2) 기말평가 시 (저가법에 따른 평가손실 인식 시)	파산, 부패 등 세법상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손금불산입
미수 선수	미수수익	원천징수대상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 인식액	익금불산입
	미지급금 등	미확정비용(accrual)	세무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을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비용 인식 시 손금불산입
	선급금 등	진행률 적용이 어려운 용역제공과 관련과 관련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령한 착수금, 중도금관련	동 선급금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식 시 동 비용 손금불산입
	선수금 등	세무상 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는데 불구하고 수익으로 인식 시	익금불산입
준비금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대손 관련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대손)	1)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경우	손금부인 손금산입
퇴직 관련	퇴직보험 예치금	한도 내 금액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퇴충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고정 자산	고정자산	비상각자산	세법에서 요건 충족 시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가능
		상각자산	상각범위액 초과시 손금불산입(조특법상 특별상각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
현가 할인	현재가치 할인차금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수익/비용에 대하여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표 1〉 세무조정 사항(계속)

분류	계정과목별	상 황	세무조정
접대비 기부	접대비	세법상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세법상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지급 이자	지급이자	세법상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기타 조정 사항	개발비 (회계상 자산)	내용연수 신고 시	개발비 상각액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한도액 초과 시 손금불산입
		무신고 시	개발비 상각액 5년 기준 한도액 초과 시 손 금불산입
	자산의 고/저가 매입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시가와의 차이 손금산입
		특수관계자간 저가매입	양도 시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상 영향 없으나 개인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
		비특수관계자간 고과매입	시가의 130% 초과금액과의 차이 손금산입
	기타 부채성 충당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 액 부인됨	손금불산입
	외화자산 부채	기말 기준 환율과 회사적용환율차이	동 차이금액에 대하여 익금/손금산입 모두 발생 가능(실무상 감사대상회사는 기준 환율 적용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외국회사의 경우 본사적용환율로 평가하여 세무조정 발생함)
	배당금	① 회계 상 반영 않는 주식배당과 무 상주배당(세무상 의제배당요건 충 족시) ② 배당결의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배당금 미인식한 경우	익금산입
	전기요류 수정손익	자본조정으로 반영	익금(손금)산입, 기타 소득처분으로 세무상 손익이 된 금액이 다시 익금(손금)불산입
		손익항목으로 반영	상기 자산 부채와 관련 세무조정 대상 손익 의 경우 손금(익금)불산입 모두 발생 가능

2. 선행연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현걸(2002)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 발생빈도 및 금액이 기업규모, 업종, 부채비율, 세무상 결손금 유무로 구분한 기업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연법인세 회계가 최초로 적용되어 세무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1999년도 단일 연도의 세무조정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세무조정 금액이 기업규모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나타내었다. 둘째, 분산분석결과 기업규모 및 업종에서 일시적 차이의 세무조정개수에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일시적 가산조정개수가 차감조정개수보다 많았으며, 영구적 가산조정 금액이 차감조정 금액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임인환(2002)은 자산규모, 수입금액, 과세표준 등에 따라 세무조정 발생건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2000년도 말 결산인 외부 감사대상법인 20개와 비외부 감사대상법인 81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비외부 감사대상법인의 경우 세법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권순창 외(2004)는 일시적 및 영구적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총금액과 기업규모, 부채비율, 현금흐름, 연구개발비, 이익증가율, 자본집약도 등의 기업특성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단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부채비율, 이익증가율, 자본집약도에 따라 일부 세무조정항목에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기업특성과 세무조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표본기간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항목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단지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 등의 단일변량분석만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표본기간을 2001년부터 2003년으로 3개년동안의 세무조정사항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며, 연구방법 역시 로짓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부적인 세무조정항목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세무조정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기업특성과 세무조정의 관련성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근본 목적 및 양 회계의 수익·비용의 인식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하여 기업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야만 한다. 세무조정을 행함에 있어서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과세소득을 늘리는 가산조정 혹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감조정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다를 것이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역시 상이한 동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세무조정항목 중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시적 및 영구적 세무조정 항목을 통한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의 조정빈도, 조정금액, 그리고 세무조정 성격상 유사한 항목들을 그룹화한 개별 세무조정 항목별들의 조정빈도 및 조정금액이 기업특성과 관련성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자비용으로 인한 손금 산입으로 인하여 세금비용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세법규정상 차입금과다법인 등의 경우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자비용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²⁾. 그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조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전규안(1997)에 의하면 타인자본의 조달은 법인세부담의 감소와 함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감소를 가져와서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 유효법인세율의 분모와 분자를 모두 감소시키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선행연구 결과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Stickney and McGee(1982)와 안숙찬(1996)은 부채비율과 유효법인세율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전규안(1997)과 최순재·이성구(2005)는 부채비율과 조세부담과는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과다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거나,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경우 이에 대한 익금불산입 혹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부채비율과 세무조정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1: 부채비율은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둘째, 세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자본집중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조세혜택을 부여하

2) 기업의 문어발식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사업 확장 억제가 가능하고,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부채비율 감소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차입금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폐지하였다(조특법 제135조).

고 있다. 또한 자본집중도가 높을 경우, 즉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상각제도를 통하여 감가상각비용의 조기인식으로 인하여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본집중도에 따라 세무조정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규안, 1997; 김진동, 2001; 최순재·이성구, 2005).

또한 조세를 절감시키는 감세효과에는 이자비용의 인식을 통한 부채감세효과와 감가상각비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인식을 통한 비부채감세효과가 있다. 이러한 부채감세효과와 비부채감세효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DeAngelo and Masulis(1980)가 제시한 대체효과가설이 있다. 대체효과가설에 의하면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간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통한 비부채감세수단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통한 감세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의 사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 역시 부채감세효과와 비부채감세효과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MacKie-Mason, 1990; 신승표, 1999; 전규안, 2004). 그리고 감가상각비 및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을 과대인식하더라도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의 증가보다는 작은 폭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수익·비용관련 세무조정 역시 자본집중도와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 자본 집중도는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셋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가산 및 차감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조세비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기초를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경우 과세소득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그러한 경우 조세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가급적 차감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세금비용을 부담할 경우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즉 법인세 유연화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정영기(1997)에 의하면 당기 과세소득이 낮아 과세표준율이 과거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하게 되면 조세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정사항을 적절히 이용하리라고 기대된다. 반면에 세무조정 계산 시 수입이 크게 증가하거나 손금산입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소득이 기대이상 증가되어 과세표준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무조정항목을 선택하여 조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기대된다. 왜냐하면 당기의 증가된 과세표준율이 차년도 이후에 새로운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 산업별경기추세, 수입, 시장점유율 등의 외형에 맞추어 법인세를 유연화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의 수준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하여 세금비용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수익성은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넷째,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거나 비상장 기업일 경우 외부주주의 압력이 작기 때문에 회계이익 증가를 통한 주가상승 등의 외부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즉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을수록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중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비용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할 유인이 클 것이다. 따라서 대주주 지분율로 측정한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통하여 세금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내부소유 집중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통제하는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전문경영자가 경영을 위임받아 수행할 경우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세금비용을 가능한 인식하지 않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세금비용을 절감하는 세무조정 즉 차감조정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한 세금비용을 이연시키고자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내부소유집중도는 기업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내부소유 집중도는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이사회는 주된 목적은 경영자를 감시 및 통제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특히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자와의 독립성이 높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즉 경영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Fama, 1980 ; Fama · Jensen, 1983 ; Maug, 1997 ; Belden et al, 2005). 즉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 지배구조는 향상되고, 그에 따라 경영 투명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법의 많은 조항들은 무분별한 문어발식 투자에 따른 차입 및 경영자의 사적남용 등을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행위와 기업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차입 및 투자행위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억제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 역시 감소할 것이다. 즉 사외이사를 통한 지배구조개선은 세무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비율은 세무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5: 사외이사비율은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여섯째, 감사인의 품질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감사인이 규모가 큰 감사법인(Big4)에 속해 있는가, 혹은 규모가 작은 감사법인(non-Big4)에 속해 있는 가로 대변될 수 있다. Beatty(1989)는 미국의 Big8 소속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신규상장기업은 좀 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규상장 시 주식가격의 평가절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Toeh and Wong(1993)은 Big8에서 감사받은 기업의 이익의 질은 Non-Big8에서 감사를 받은 기업의 이익의 질보다 높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Big4 소속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전문성 및 독립성이 높음에 따라 경영자의 사적편익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원선 · 유재권(2005)의 연구에 의하면 Big4 소속법인은 두 가지 이유에서 non-big4 소속법인보다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나는 명성에 맞는 감사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감사회사의 이익의 기회주의적 과대계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실패에 따른 소송의 경제적 부담이 non-big4 소속법인에 비하여 더 크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big4 제휴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non-big4 제휴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해서 대체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ig4 소속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세무조정 역시 non-Big 4소속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기업과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감사품질은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

IV. 표본 및 연구모형

1. 표 본

본 연구의 표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 ② 금융업으로 구분되지 않은 기업
- ③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을 보고한 기업
- ④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에 재무자료 등이 존재하는 기업
- ⑤ 사업보고서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통하여 대주주지분을 및 사외이사 현황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⑥ 자본 잠식 기업은 제외

위의 표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연도 1,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적용 규정이 타 산업과 상이하여 그에 따라 세무조정사항 역시 금융업만의 특이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금융업을 제외하고 표본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을 확인하여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개별 항목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극단치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변수 분포의 양쪽 끝 5% 이내에서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는 winsorization³⁾ 기법을 사용하였다.

3) 예를 들어 특정변수의 분포 중 5%에 해당하는 값이 0.05라면 5% 이하인 값에 0.05를 부여하고, 95%에 해당하는 값이 0.95라면 95% 이상인 값에 0.95를 부여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정범위 이상의 값을 제거하는 절단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표본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2〉 표본선정 절차

구 분	2001	2002	2003	합계
전 체 표 본	356	540	553	1,449
자본잠식제외	(12)	(3)	(3)	(18)
자료미비제외	(26)	(19)	(17)	(62)
최 종 표 본	318	518	533	1,369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업특성에 따라 세무조정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 특성과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방향 및 조정빈도, 그리고 조정금액이 관련성을 갖는가를 살펴 보았다. 둘째, 다양한 세무조정 항목 중 어떤 항목이 기업특성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기업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항목을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형식 (1)~(5)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모형식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의 당해연도의 세무조정은 차기 이후에 그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세금비용은 인식시점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총 세금비용을 동일하게 된다. 하지만 영구적 차이로 인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차후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 회계 간에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는 세무조정 발생원인과 총세금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과 일시적 차이 및 영구적 차이와의 관련성을 각각 검증하기 위하여 각 모형의 종속변수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모형식을 수립하였다.

둘째, 기업특성과 세무조정 간에 관련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기업이 가산조정을 하는 경우와 차감조정을 하는 경우로 모형식을 구분하였다. 가산조정(익금 및 손금불산입)은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세금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나, 차감조정(손금 및 익금불산입)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기업의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기업특성에 따라 상이한 세무조정 동기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모형식을 수립하였다.

셋째, 기업특성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여부, 세무조정 빈도, 그리고 세무조정 금액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빈도와 조정금액을 통하여 기업특성과 개별세무조정 항목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총 29개로 구분하여 조사한 개별 세무조정 항목을 서로 관련성이 있는 항목별로 11개로 그룹화 하여 개별세무조정 항목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일시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9개의 세무조정 그룹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관련 그룹에는 장단기투자주식 평가손익과 지분법적용주식 평가손익을 포함하였고, 재고자산 관련 그룹에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인식과 기말재고자산 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수익/비용 인식 시기 관련 그룹에는 장단기 미수/미지급항목과 선급/선수항목을 포함하였다. 준비금 관련 그룹에는 세법상의 준비금 전입과 환입에 관한 조정을 포함하였다. 대손관련 그룹에는 대손금 부인액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그리고 전기 대손충당금 환입 및 손금추인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퇴직관련 그룹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단채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 관련 조정을 포함하였다. 고정자산 관련 그룹에는 고정자산 압축기장충당금 등과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을 포함하였다.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그룹에는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의 부인 및 추인액으로 구성하였다. 영구적 차이를 유발하는 세무조정의 2개의 그룹은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그룹과 지급이자 관련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부채비율(LEV)은 타인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자본집약도(DEPAS)는 유형자산에서 비상각대상자산인 토지, 임목, 건설중인자산을 차감한 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내부소유집중도(MSH)를 나타내는 변수는 대주주 지분율(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계)을 통해 측정하였다. 지배구조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변수(OBODR)는 사외이사수를 총 등기이사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감사품질(BIG)을 나타내는 변수로 BIG4 소속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고, 대규모기업 소속 여부(GROUP)에 따라 소속 간에 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달라짐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이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연도간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구분 더미변수(YD)를 모형에 포함하였고, 산업간 상이한 회계 상 및 세법상 규정의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구분 더미변수(ID)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TEMPD(PERMD)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1)$$

$$TEMP_j(PERM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2)$$

$$TEMPC_j(PERMC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3)$$

$$TEMPA_j(PERMA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4)$$

$$VSGC_{i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5)$$

$$VSG_{i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quad (6)$$

<종속변수>

$TEMPD(PERMD)^4$: 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 가산 조정=1, 아니면=0

$TEMPC_j(PERMC_j)$: 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 조정 빈도

j=1 : 가산, j=2 : 차감

$TEMP_j(PERM_j)$: 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 조정 금액

j=1 : 가산, j=2 : 차감

$VSGC_{ij}$: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 빈도

i=1 : 유가증권 관련 조정

i=2 : 재고자산 관련 조정

i=3 : 수익/비용 인식 시기 관련 조정

i=4 : 이자수익 관련 조정

i=5 : 준비금 관련 조정

i=6 : 대손관련 조정

i=7 : 퇴직관련 조정

i=8 : 고정자산 관련 조정

i=9 :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조정

i=10 :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조정

i=11 : 지급이자 관련 조정

j=1 : 가산, j=2 : 차감

VSG_{ij} :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 금액

i=1 : 유가증권 관련 조정

i=2 : 재고자산 관련 조정

i=3 : 수익/비용 인식 시기 관련 조정

i=4 : 이자수익 관련 조정

i=5 : 준비금 관련 조정

i=6 : 대손관련 조정

i=7 : 퇴직관련 조정

i=8 : 고정자산 관련 조정

i=9 :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조정

i=10 :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조정

i=11 : 지급이자 관련 조정

j=1 : 가산, j=2 : 차감

<독립변수>

LEV : 부채비율(타인자본/총자산)×100

DEPAS : 자본집약도((유형자산-토지-임목-건설중인 자산)/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

MSH : 내부소유집중도(대주주 1인 지분율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

OBODR :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 수/총이사 수×100)

BIG4 : BIG4 소속 감사인=1, 아니면=0

SIZE : 기업규모(ln총자산)

GROUP : 대규모기업소속 법인=1, 아니면=0

YD : 연도 더미

ID : 산업 더미

4) 가산조정 총액에서 차감조정 총액을 차감한 순 가산 및 차감조정 금액값이 양(+)의 값이면 가산조정으로, 음(-)의 값이면 차감조정으로 정의함

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표 3>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의 비금융 상장 기업의 실제 세무조정 항목의 가산 및 차감 조정빈도와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세무조정 항목은 매출액으로 표준화하였고, 기술통계량의 양(+)의 값은 가산조정을 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차감조정을 했음을 의미한다.

일시적 차이 항목 중에는 미수/미지급항목,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준비금, 장기투자자산, 지분법 투자주식 등의 순으로 빈번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항목들 중 지분법 투자주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산조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부채성충당금, 지분법 투자주식, 재고자산, 배당금수익 등이 높은 평균값 순위를 나타냈다. 영구적 차이 항목 중에는 접대비, 법인세관련, 이자, 배당금수익 등의 순으로 조정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배당금 수익 관련 세무조정만이 차감조정빈도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가산조정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지분법 투자주식, 접대비 등의 항목의 금액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산업별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업 간에 상이한 조세혜택 혹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산업 간에는 상이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은 산업별 세무조정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시적 차이 항목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가산조정 빈도가 차감조정빈도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금액 역시 가산조정금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일시적 차이 항목의 경우 가산 및 차감 조정 간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영구적 차이 항목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가산조정 빈도가 차감조정빈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도와 금액을 보였고, 조정금액 역시 가산조정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도소매업/서비스업의 기업 당 세무조정빈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세무조정 금액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항목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복잡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 역시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을 제외하면 다른 업종 중에서는 특별히 세무조정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산업간 특례조항 및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산업 간에 심각한 조세공평성에 침해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세무조정 현황 및 기술통계

	변수정의	n	가산	차감	평균값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 시 적 차 이	단기투자자산	346	129	217	-0.0039	-0.0002	0.0144	-0.1144	0.0704
	재고자산	368	221	147	0.2094	0.0003	4.0487	-0.4788	77.6620
	미수/미지급항목	841	500	341	0.0439	0.0002	1.2760	-0.7034	36.9963
	선급/선수항목	21	8	13	-0.0002	0.0000	0.0013	-0.0034	0.0021
	이자	146	79	67	0.0012	0.0001	0.0130	-0.0200	0.1504
	배당금수익	134	118	16	0.1145	0.0017	1.2462	-0.0279	14.4320
	준비금	645	415	230	-0.0137	0.0017	0.4060	-10.2803	0.4136
	환율조정	476	101	375	-0.0017	-0.0005	0.0051	-0.0690	0.0228
	대손금	315	158	157	0.0027	0.0000	0.0364	-0.2551	0.3330
	대손충당금	835	457	378	0.0816	0.0002	2.4002	-1.7742	69.3142
	퇴직급여충당금	725	484	241	0.0164	0.0017	0.3257	-0.1778	8.4153
	부채성 충당금	190	131	59	0.6389	0.0007	1.7869	-0.5552	1.1169
	지분법투자주식	620	254	366	-0.2872	-0.0017	2.8402	-1.3005	0.5644
	장기투자자산	626	385	241	0.0030	0.0005	0.0911	-1.9300	0.5994
	장기미수/미지급	32	17	15	0.0004	0.0001	0.0059	-0.0102	0.0220
	고정자산	219	119	100	0.0036	0.0001	0.0317	-0.2055	0.2352
	감가상각	637	350	287	0.0124	0.0001	0.2919	-0.0704	7.3632
	(단체)퇴직보험	173	57	116	-0.0551	-0.0012	0.6435	-8.4153	0.1690
	퇴직보험예치금	151	44	107	-0.0049	-0.0020	0.0117	-0.0538	0.0403
	현가할인차금	202	64	138	0.0156	-0.0001	0.0859	-0.1806	0.8672
영 구 적 차 이	연구개발비	62	19	43	-0.0032	-0.0008	0.0094	-0.0479	0.0147
	접대비	676	676	0	0.0064	0.0014	0.0564	0.0000	1.4301
	기부금	48	45	3	0.0004	0.0001	0.0010	-0.0004	0.0057
	배당금수익	205	16	189	-0.0015	-0.0002	0.0116	-0.1535	0.0304
	매도가능증권	57	27	30	-0.0056	-0.0001	0.0557	-0.3368	0.1787
	지분법투자주식	24	5	19	-0.1218	-0.0017	0.5553	-2.7277	0.0067
	이자	354	340	14	0.0041	0.0005	0.0197	-0.0102	0.3101
	세금과공과	97	96	1	0.0012	0.0001	0.0049	-0.0001	0.0372
	법인세 관련	435	326	109	0.0111	0.0005	0.1516	-0.0282	3.1446

〈표 4〉 산업별 세무조정 현황

산업구분	N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가산빈도	가산금액	차감빈도	차감금액	가산빈도	가산금액	차감빈도	차감금액
음·식료품	114	349 (3.06)	2.48	312 (2.74)	-1.77	128 (1.12)	0.70	29 (0.25)	-0.18
섬유 등 제품	155	488 (3.15)	4.94	380 (2.45)	-3.51	119 (0.77)	0.94	34 (0.22)	-0.32
화학제품제조업	382	1,124 (2.94)	10.13	1,035 (2.71)	-8.97	539 (1.41)	3.76	85 (0.22)	-0.96
금속/기계산업	217	718 (3.31)	6.03	693 (3.19)	-5.88	252 (1.16)	1.35	88 (0.41)	-0.47
정밀기기제조업	310	1,108 (3.57)	13.10	935 (3.02)	-9.10	320 (1.03)	1.90	78 (0.25)	-0.96
건설업 등	96	163 (1.70)	2.57	152 (1.58)	-1.78	92 (0.96)	0.89	16 (0.17)	-0.16
도소매/서비스업	95	160 (1.38)	2.47	147 (1.27)	-1.87	81 (0.70)	0.28	35 (0.30)	-0.40

() : 괄호안의 수는 기업 당 조정빈도를 의미함(조정빈도/기업수)

N : 해당 산업소속 기업수를 의미함

<표 5>는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주요 변수 중 부채비율(LEV)의 경우 평균값과 중간값은 각각 47.16%와 46.71%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대값이 98.00%로 나타났다. 이는 winsorization 기법을 통해 극단치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내부소유집중도(MSH)의 경우에서 평균값이 32.44%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높은 지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사외이사비율(OBODR)의 경우 평균값이 21.19%이고 중간값이 25%를 나타냈다. 이는 현행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⁵⁾에 의하여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증권, 은행, 종합 금융, 대형 보험 및 대형 투자 신탁 은행 포함)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총수의 1/2 이상 및 3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표 5〉 주요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값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EV	47.1688	46.7128	19.2603	1.9906	98.0087
DEPAS	0.2413	0.1946	0.1967	0.0000	2.1280
ROA	3.4613	3.3900	6.0921	-10.7150	14.9350
MSH	32.4479	30.6200	18.7425	0.0000	89.1200
OBODR	21.1994	25.0000	15.4023	0.0000	83.3333
BIG	0.6632	1.0000	0.4728	0.0000	1.0000
SIZE	19.2104	18.9780	1.4384	16.2299	24.7570
GROUP	0.2201	0.0000	0.4145	0.0000	1.0000

LEV : 부채비율($\text{타인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DEPAS : 자본집약도($\text{유형자산} - \text{토지} - \text{임목}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

MSH : 내부소유집중도(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계)

OBODR : 사외이사비율($\text{사외이사 수} / \text{총이사 수} \times 100$)

BIG : BIG4 소속 감사인=1, 아니면=0 SIZE : 기업규모($\ln \text{총자산}$)

GROUP : 대규모기업소속 법인=1, 아니면=0

2. 다변량분석 결과

가. 일시적/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여부 및 금액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시적 차이 및 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여부와 조정금액을 종속변수로 삼아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가산 혹은 차감조정 여부와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가산조정일 경우 1, 차감조정일 경우 0을 부여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패널 1)에서 나타난 분석결과, 일시적 차이의 경우 총자산이익률(ROA)만이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회계이익의 증가로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의 세금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기업이 차감조정을 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과세소득이 기대이상 증가되어 과세표준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무조정항목을 선택하여 세금비용을 이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영구적 차이의 경우 내부소유집중도(MSH), 사외이사비율(OBODR)이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내부소유집중도(MSH) 역시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소유집중도가 높은 경우 기업에 대한 외부시장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가급적 세금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현금유출을 막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사외이사비율(OBODR)이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적 차이의 대다수의 항목(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들이 경영자의 사적편익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여 가산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효율적인 감시자로 평가되고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행위 및 무분별한 투자 및 차입이 억제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규정에 덜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세무조정 금액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정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패널 2)의 분석결과는 (패널 1)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 여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패널 1)에서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BIG4 감사인 여부 변수가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에서 유의한 양(+)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BIG4소속 감사인이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후 소송위험을 줄이고, 감사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조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여부 및 금액 실증분석 결과

(패널 1) 기업특성과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여부

$$TEMPD(PERMD)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종속변수	TEMPD		PERMD		TEMPD_PERMD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절편	-0.8197	0.5512	4.7437	0.0084	0.7694	0.5799
LEV	0.0010	0.2994	-0.0041	0.4738	0.0036	0.4089
DEPAS	-0.2708	0.5337	-0.3300	0.5629	-0.8725	0.0443
ROA	-0.1063	<.0001	-0.0091	0.6033	-0.1043	<.0001
MSH	0.1615	0.3011	-0.5177	0.0251	-0.1549	0.3412
OBODR	0.0047	0.2870	-0.0184	0.0020	-0.0023	0.6149
BIG	-0.0360	0.8094	0.3229	0.1183	0.1528	0.3187
SIZE	0.0261	0.6911	-0.1929	0.0337	-0.0393	0.5563
GROUP	-0.1719	0.4314	0.2086	0.4935	-0.3487	0.1140
YD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종속변수	TEMPD		PERMD		TEMPD_PERMD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표본수	1,025		931		1,369	
χ^2 (p값)	107.3150	(<.0001)	41.0473	(0.0009)	102.1593	(<.0001)

TEMPD : 일시적 차이 가산조정=1, 아니면=0

PERMD :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1,아니면=0

TEMPD_PERMD : 일시적과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1, 아니면=0

(패널 2) 기업특성과 세무조정 금액

$$TEMP_j(PERM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종속변수	TEMP		PERM		TEMP_PERM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절편	-0.2150	0.8887	0.9400	0.0653	0.2000	0.8976
LEV	0.0020	0.6839	-0.0003	0.8340	0.0007	0.8851
DEPAS	-0.5260	0.2494	-0.1980	0.1917	-0.8520	0.0654
ROA	-0.1750	<.0001	-0.0079	0.1209	-0.1960	<.0001
MSH	-0.0813	0.6748	-0.1200	0.0617	-0.2230	0.2554
OBODR	0.0008	0.8806	-0.0035	0.0554	-0.0031	0.5822
BIG	0.1140	0.5475	0.2040	0.0012	0.4430	0.0206
SIZE	0.0179	0.8207	-0.0368	0.0601	0.0035	0.9647
GROUP	0.1170	0.6531	-0.1370	0.1143	-0.1810	0.4916
YD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6)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유의성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우도비 검정 실시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설설정

$$H_0 : \beta_0 = \beta_1 = \dots \beta_k$$

$$H_1 : \text{최소한 하나의 } \beta_j \neq 0 (j = 1, 2, \dots, k)$$

(2) 우도비검정 통계량

$$A = -2 \ln \frac{L_0}{L} = -2 \ln L_0 + 2 \ln L$$

(L_0 : k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우도)

(L : k개의 독립변수들이 정보를 모두 이용했을 때 우도)

검정통계량 A 의 표본분포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자유도가 k인 χ^2 분포를 따른다.

종속변수	TEMP		PERM		TEMP_PERM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표본수	1,025		931		1,369	
수정 R^2	0.1354		0.0954		0.1123	

TEMP : 일시적 차이 조정 금액

PERM : 영구적 차이 조정 금액

TEMP_PERM : 일시적과 영구적 차이 조정 금액

변수설명은 <표 5> 참조

나. 일시적/영구적 차이 가산 혹은 차감 세무조정 빈도 및 금액 분석

<표 7>의 (패널 1)은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일시적 가산조정 빈도와만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산조정을 많이 함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도(DEPAS)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가산 조정빈도와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자본집약도가 높을 경우 감가상각비용 인식 및 조세혜택 등을 이용하여 세금비용이 증가하는 가산조정을 억제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변수인 ROA는 일시적 가산조정과는 음(-)의 유의성을, 일시적 차감조정과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이익이 증가할 경우 당해연도의 가산조정은 억제하고, 차감조정을 증가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부소유집중도(MSH)의 경우 일시적 차감조정빈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유의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외이사비율(OBODR)의 경우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 빈도와는 음(-)관련성을 보였고, 영구적 차이 차감조정 빈도와는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접대비 및 지급이자 등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행위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세금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세무조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BIG4소속 감사법인 여부와 일시적 차이 가산 및 차감조정 빈도가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영구적 차이 차감빈도와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감사인과 세무조정빈도와의 일관성 있는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패널 2)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 조정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발생빈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와는 달리 일부 기업특성변수에서만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ROA는 일시적 가산 금액과 음(-), 차감조정 금액과 양(+)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 영구적 가산조정 금액과 음(-)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수익성이 따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무조정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본집중화 변수(DEPAS)의 경우 영구적 가산조정 금액과만 음(-)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BIG4 소

속 감사법인 여부와는 영구적 차감조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감사인과 세무조정금액과의 관련성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표 7〉 일시적/영구적 차이 가산 & 차감 세무조정 빈도 및 금액 실증분석 결과

(패널 1) 일시적/영구적 차이 가산 & 차감 세무조정 빈도

$$TEMPC_j(PERMC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종속 변수	일시가산빈도		일시차감빈도		영구가산빈도		영구차감빈도		총가산조정빈도		총차감조정빈도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절편	-0.9968	0.4051	0.1824	0.8813	4.6724	<.0001	0.6251	0.1955	3.4969	0.0245	1.1462	0.4260
LEV	0.0092	0.0112	-0.0026	0.4777	0.0009	0.7040	-0.0012	0.3975	0.0088	0.0594	-0.0058	0.1790
DEPAS	-1.3218	0.0004	-0.5212	0.1717	-0.4795	0.0534	-0.1879	0.2218	-2.0136	<.0001	-0.6538	0.1540
ROA	-0.0866	<.0001	0.0369	0.0010	-0.0004	0.9589	-0.0026	0.5508	-0.0891	<.0001	0.0336	0.0107
MSH	0.0846	0.5396	-0.3257	0.0208	-0.0659	0.4551	0.0767	0.1606	0.0711	0.6858	-0.2393	0.1424
OBODR	0.0085	0.2807	-0.0017	0.6627	-0.0011	0.0675	0.0038	0.0146	0.0091	0.7003	0.0024	0.6121
BIG	0.4455	0.0007	0.3626	0.0070	-0.0558	0.5082	-0.1000	0.0560	0.3951	0.0189	0.1978	0.2047
SIZE	0.1872	0.0011	0.1573	0.0072	-0.0920	0.0138	0.0184	0.4251	0.1243	0.0945	0.1670	0.0156
GROUP	-0.0070	0.9707	0.1880	0.3369	0.1714	0.1686	0.1780	0.0212	0.1660	0.5032	0.4175	0.0697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539		486		780		151		843		526	
수정 R ²	0.1254		0.0727		0.1453		0.0964		0.1001		0.0748	

(패널 2) 일시적/영구적 차이 가산 & 차감 세무조정 금액

$$TEMPA_j(PERMA_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종속 변수	일시가산금액		일시차감금액		영구가산금액		영구차감금액		총가산조정금액		총차감조정금액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절편	4.8300	0.0358	1.1140	0.0711	2.9530	0.0886	0.2590	0.6035	7.0640	0.0074	3.0460	0.1257
LEV	0.0064	0.3957	-0.0005	0.7852	-0.0083	0.1387	0.0005	0.7423	-0.0035	0.6834	-0.0066	0.3045
DEPAS	0.9210	0.1878	-0.2210	0.2281	-0.9740	0.0590	0.1810	0.2225	0.2630	0.7369	0.6000	0.3107
ROA	-0.1980	<.0001	0.0112	0.0681	-0.0414	0.0168	-0.0032	0.5222	-0.1830	<.0001	0.0374	0.0598
MSH	-0.5250	0.1867	-0.1230	0.1142	-0.1090	0.6187	0.0856	0.1752	-0.2570	0.4405	-0.0298	0.9055
OBODR	-0.0045	0.5947	-0.0026	0.2424	-0.0011	0.8607	0.0007	0.7200	-0.0114	0.2327	-0.0049	0.4977

종속 변수	일시가산금액		일시차감금액		영구가산금액		영구차감금액		총가산조정금액		총차감조정금액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BIG	0.7750	0.0069	0.2490	0.0011	0.5860	0.0061	-0.0036	0.9527	1.1090	0.0006	0.6270	0.0105
SIZE	-0.0827	0.4888	-0.0346	0.2758	-0.0597	0.5030	0.0004	0.9889	-0.2010	0.1375	-0.0854	0.4037
GROUP	0.0472	0.9048	-0.1950	0.0631	-0.1200	0.6837	0.0128	0.8796	-0.1550	0.7281	-0.1390	0.6800
Y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539		486		780		151		843		526	
수정R ²	0.1032		0.0516		0.0509		-0.0014		0.0772		0.0272	

변수설명은 <표 5> 참조

다. 세무조정항목별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 빈도 분석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떠한 개별세무조정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기업특성과 개별세무조정 항목의 가산 및 차감조정 빈도 간에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LEV)은 채고자산, 미수/선수, 이자수익, 준비금, 대손, 퇴직,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항목의 가산조정빈도와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차감조정빈도와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에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자본집중화(DEPAS) 정도와 채고자산, 미수/선수, 대손 관련 세무조정은 음(-)의 가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수/선수, 이자수익, 퇴직 관련 차감 세무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집중도가 높을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써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인식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다른 항목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그에 따라 익금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감소하나, 손금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ROA)의 경우 채고자산, 미수/선수금, 준비금, 대손, 퇴직, 고정자산 관련 항목이 가산조정 빈도와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차감조정빈도와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이 높을 경우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무조정항목을 이용하여 일관성 있게 과세소득을 감소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내부소유집중도(MSH)의 경우 미수/선수, 준비금, 고정자산, 접대비 관련 항목이 가산조정빈도와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미수/선수 관련 항목의 차감조정과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내부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세금비용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낮추는 세무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미

수/선수, 준비금, 고정자산 관련 항목의 가산세무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기업특성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던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영구적 차이 관련 세무조정 항목의 가산조정이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내부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대주주의 사적편익 추구로 인한 접대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가산조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 판단된다.

영구적차이 항목 중 지급이자 관련 항목의 가산조정빈도와 사외이사비율이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경영자의 사적편익 및 무분별한 차입 및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를 통한 내부통제가 이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이 억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정빈도와 BIG4 소속여부 감사인과는 일관성 있는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표 8〉 세무조정항목 그룹별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 빈도

$$VSGC_{i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절편	LEV	DEPAS	ROA	MSH	OBODR	BIG	SIZE	GROUP	YD	ID	수정 R^2
유 가 산 증 감	가	-1.0535 (<.0001)	0.0007 (0.2841)	-0.0704 (0.2544)	-0.0034 (0.1029)	0.0359 (0.1708)	0.0016 (0.0367)	0.0061 (0.8633)	0.0463 (<.0001)	-0.0016 (0.9498)	포 함	포 함	0.0639
	차	-0.3229 (0.1578)	-0.0007 (0.3162)	-0.1111 (0.1022)	-0.0012 (0.6016)	-0.0175 (0.5439)	-0.0016 (0.0584)	-0.0217 (0.5752)	0.0277 (0.0185)	0.0388 (0.1682)			0.0721
	감												
채 고 자 산	가	0.4861 (0.0070)	-0.0004 (0.5240)	-0.1002 (0.0612)	-0.0075 (<.0001)	-0.0132 (0.5615)	0.0004 (0.5617)	0.0392 (0.1994)	-0.0214 (0.0211)	0.0784 (0.0004)	포 함	포 함	0.0565
	차	-0.0700 (0.6517)	-0.0009 (0.0598)	0.0639 (0.1658)	0.0033 (0.0338)	-0.0069 (0.7249)	0.0005 (0.3498)	-0.0410 (0.1194)	0.0056 (0.4865)	0.0207 (0.2781)			0.0151
	감												
미 수 선 수	가	0.0659 (0.8442)	0.0026 (0.0155)	-0.2008 (0.0443)	-0.0056 (0.0930)	0.0940 (0.0266)	0.0025 (0.0430)	-0.0358 (0.5291)	0.0137 (0.4260)	0.1003 (0.0152)	포 함	포 함	0.1174
	차	-0.4035 (0.1901)	-0.0033 (0.0009)	-0.0986 (0.2815)	0.0060 (0.0516)	-0.0871 (0.0253)	-0.0016 (0.1597)	-0.1284 (0.0140)	0.0371 (0.0194)	0.0939 (0.0133)			0.0811
	감												
이 자 수 익	가	-0.0079 (0.8356)	-0.0001 (0.2575)	-0.0064 (0.5763)	-0.0005 (0.1644)	0.0048 (0.3170)	0.0000 (0.8251)	0.0021 (0.7484)	0.0018 (0.3651)	0.0003 (0.9492)	포 함	포 함	0.0136
	차	0.0366 (0.4494)	-0.0003 (0.0740)	0.0267 (0.0639)	0.0002 (0.6209)	0.0047 (0.4470)	-0.0001 (0.6486)	-0.0011 (0.8907)	0.0000 (0.9949)	0.0076 (0.2018)			0.0238
	감												

		절편	LEV	DEPAS	ROA	MSH	OBODR	BIG	SIZE	GROUP	YD	ID	수정 R^2
준비금	가산	-0.3356 (0.0102)	-0.0004 (0.3231)	0.0771 (0.0470)	-0.0024 (0.0637)	0.0273 (0.0977)	0.0002 (0.6405)	-0.0345 (0.1190)	0.0165 (0.0141)	0.0257 (0.1098)	포함	포함	0.0232
	차감	-0.9566 (<.0001)	-0.0011 (0.0881)	0.0092 (0.8809)	-0.0022 (0.2808)	-0.0186 (0.4769)	-0.0016 (0.0321)	0.0967 (0.0058)	0.0598 (<.0001)	0.0559 (0.0281)			0.1503
	가산	-0.7231 (0.0093)	0.0022 (0.0145)	-0.1756 (0.0337)	0.0015 (0.5975)	-0.0037 (0.9162)	0.0002 (0.8761)	-0.0795 (0.0916)	0.0283 (0.0478)	0.1686 (<.0001)			0.1063
	차감	0.0250 (0.9092)	-0.0007 (0.3575)	-0.0302 (0.6438)	0.0057 (0.0089)	0.0124 (0.6559)	0.0001 (0.9499)	-0.0315 (0.3971)	0.0043 (0.7028)	-0.0146 (0.5894)			0.0301
대손관련	가산	-0.5446 (0.0174)	0.0015 (0.0369)	-0.0944 (0.1652)	-0.0094 (<.0001)	0.0381 (0.1873)	-0.0013 (0.1317)	-0.0262 (0.4991)	0.0275 (0.0195)	0.0705 (0.0124)	포함	포함	0.0724
	차감	-1.1427 (<.0001)	-0.0021 (0.0213)	0.2344 (0.0048)	0.0076 (0.0063)	-0.0401 (0.2555)	-0.0003 (0.8027)	0.0382 (0.4195)	0.0771 (<.0001)	0.0439 (0.2014)			0.1111
	가산	-0.0190 (0.8831)	0.0001 (0.7723)	0.0010 (0.9796)	-0.0038 (0.0029)	0.0345 (0.0345)	0.0000 (0.9505)	-0.0202 (0.3566)	0.0004 (0.9471)	0.0068 (0.6673)			0.0334
	차감	0.1723 (0.3403)	0.0005 (0.3872)	-0.0850 (0.1139)	0.0032 (0.0811)	0.0066 (0.7711)	0.0002 (0.7970)	-0.0100 (0.7447)	-0.0102 (0.2733)	0.0337 (0.1299)			0.0516
퇴직관련	가산	-1.4358 (<.0001)	-0.0004 (0.5459)	-0.0614 (0.3395)	-0.0024 (0.2678)	0.0142 (0.6035)	0.0009 (0.2319)	-0.0944 (0.0101)	0.0702 (<.0001)	0.0510 (0.0555)	포함	포함	0.0939
	차감	-0.3282 (0.1238)	-0.0013 (0.0706)	-0.0545 (0.3904)	0.0010 (0.6530)	0.0096 (0.7219)	-0.0010 (0.2070)	0.0194 (0.5917)	0.0275 (0.0122)	0.0797 (0.0024)			0.0941
	가산	-0.0130 (0.8634)	-0.0002 (0.4463)	-0.0071 (0.7505)	-0.0005 (0.4669)	-0.0177 (0.0632)	0.0000 (0.8788)	-0.0029 (0.8235)	0.0018 (0.6475)	0.0205 (0.0274)			0.0203
	차감	-0.0338 (0.7135)	-0.0001 (0.7743)	0.0531 (0.5235)	-0.0005 (0.5753)	-0.0007 (0.9549)	-0.0002 (0.5537)	0.0058 (0.7097)	0.0063 (0.1832)	0.0127 (0.2638)			0.0381
고정자산	가산	0.5283 (0.1096)	-0.0015 (0.1641)	-0.1524 (0.1207)	-0.0021 (0.5292)	-0.0436 (0.2959)	-0.0029 (0.0159)	-0.0253 (0.6516)	-0.0102 (0.5487)	0.0696 (0.0871)	포함	포함	0.0637
	차감	-0.2427 (0.0957)	-0.0002 (0.7396)	-0.0510 (0.2394)	-0.0011 (0.4576)	0.0268 (0.1453)	0.0003 (0.6062)	0.0009 (0.9720)	0.0117 (0.1176)	0.0257 (0.1519)			0.0105
	가산	-0.0130 (0.8634)	-0.0002 (0.4463)	-0.0071 (0.7505)	-0.0005 (0.4669)	-0.0177 (0.0632)	0.0000 (0.8788)	-0.0029 (0.8235)	0.0018 (0.6475)	0.0205 (0.0274)			0.0203
	차감	-0.0338 (0.7135)	-0.0001 (0.7743)	0.0531 (0.5235)	-0.0005 (0.5753)	-0.0007 (0.9549)	-0.0002 (0.5537)	0.0058 (0.7097)	0.0063 (0.1832)	0.0127 (0.2638)			0.0381
현가할	가산	-1.4358 (<.0001)	-0.0004 (0.5459)	-0.0614 (0.3395)	-0.0024 (0.2678)	0.0142 (0.6035)	0.0009 (0.2319)	-0.0944 (0.0101)	0.0702 (<.0001)	0.0510 (0.0555)	포함	포함	0.0939
	차감	-0.3282 (0.1238)	-0.0013 (0.0706)	-0.0545 (0.3904)	0.0010 (0.6530)	0.0096 (0.7219)	-0.0010 (0.2070)	0.0194 (0.5917)	0.0275 (0.0122)	0.0797 (0.0024)			0.0941
	가산	-0.0130 (0.8634)	-0.0002 (0.4463)	-0.0071 (0.7505)	-0.0005 (0.4669)	-0.0177 (0.0632)	0.0000 (0.8788)	-0.0029 (0.8235)	0.0018 (0.6475)	0.0205 (0.0274)			0.0203
	차감	-0.0338 (0.7135)	-0.0001 (0.7743)	0.0531 (0.5235)	-0.0005 (0.5753)	-0.0007 (0.9549)	-0.0002 (0.5537)	0.0058 (0.7097)	0.0063 (0.1832)	0.0127 (0.2638)			0.0381
접대비부	가산	0.5283 (0.1096)	-0.0015 (0.1641)	-0.1524 (0.1207)	-0.0021 (0.5292)	-0.0436 (0.2959)	-0.0029 (0.0159)	-0.0253 (0.6516)	-0.0102 (0.5487)	0.0696 (0.0871)	포함	포함	0.0637
	차감	-0.2427 (0.0957)	-0.0002 (0.7396)	-0.0510 (0.2394)	-0.0011 (0.4576)	0.0268 (0.1453)	0.0003 (0.6062)	0.0009 (0.9720)	0.0117 (0.1176)	0.0257 (0.1519)			0.0105
	가산	-0.0130 (0.8634)	-0.0002 (0.4463)	-0.0071 (0.7505)	-0.0005 (0.4669)	-0.0177 (0.0632)	0.0000 (0.8788)	-0.0029 (0.8235)	0.0018 (0.6475)	0.0205 (0.0274)			0.0203
	차감	-0.0338 (0.7135)	-0.0001 (0.7743)	0.0531 (0.5235)	-0.0005 (0.5753)	-0.0007 (0.9549)	-0.0002 (0.5537)	0.0058 (0.7097)	0.0063 (0.1832)	0.0127 (0.2638)			0.0381
지급이자	가산	0.5283 (0.1096)	-0.0015 (0.1641)	-0.1524 (0.1207)	-0.0021 (0.5292)	-0.0436 (0.2959)	-0.0029 (0.0159)	-0.0253 (0.6516)	-0.0102 (0.5487)	0.0696 (0.0871)	포함	포함	0.0637
	차감	-0.2427 (0.0957)	-0.0002 (0.7396)	-0.0510 (0.2394)	-0.0011 (0.4576)	0.0268 (0.1453)	0.0003 (0.6062)	0.0009 (0.9720)	0.0117 (0.1176)	0.0257 (0.1519)			0.0105
	가산	-0.0130 (0.8634)	-0.0002 (0.4463)	-0.0071 (0.7505)	-0.0005 (0.4669)	-0.0177 (0.0632)	0.0000 (0.8788)	-0.0029 (0.8235)	0.0018 (0.6475)	0.0205 (0.0274)			0.0203
	차감	-0.0338 (0.7135)	-0.0001 (0.7743)	0.0531 (0.5235)	-0.0005 (0.5753)	-0.0007 (0.9549)	-0.0002 (0.5537)	0.0058 (0.7097)	0.0063 (0.1832)	0.0127 (0.2638)			0.0381

변수설명은 <표 5> 참조

라. 세무조정항목별 세무조정 금액 분석

기업특성에 따라 어떠한 세무조정항목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별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금액을 통하여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표 9>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LEV)은 미수/선수, 대손관련 항목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세무조정 빈도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금액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었다. 자본집약도(DEPAS)와 모든 세무조정 항목과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차감조정금액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감소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수익성(ROA)과는 모든 세무조정 항목이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감소하기 위하여 이를 항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석 가능할 것이고, 세무당국에서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소유집중도(MHS)와는 미수/선수 관련 항목이 양(+)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사외이사비율(OBODR)과는 영구적차이 항목인 지급이자 관련 항목과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BIG4 소속 여부와 미수/선수금, 대손,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세무조정금액이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서 감사 서비스 및 세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략적이고 치밀한 세무전략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를 몇몇 세무조정항목을 통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감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세무조정 항목 그룹별 금액분석

$$VSG_{ij} = \alpha + \beta_1 LEV + \beta_2 DEPAS + \beta_3 ROA + \beta_4 MSH + \beta_5 OBODR + \beta_6 BIG + \beta_7 SIZE + \beta_8 GROUP + \beta_9 YD + \beta_{10} ID + \epsilon$$

	절편	LEV	DEPAS	ROA	MSH	OBODR	BIG	SIZE	GROUP	YD	ID	수정 R^2
유가 증권	-6.122	0.0009	-0.325	-0.009	0.144	0.00293	-0.033	0.161	0.0566	포 함	포 함	0.0754
	(<.0001)	(0.6986)	(0.1245)	(0.1855)	(0.1089)	(0.2564)	(0.7845)	(<.0001)	(0.5181)			
채고 자산	-1.313	-0.0025	-0.322	-0.032	-0.0435	0.00205	-0.0029	-0.042	0.282	포 함	포 함	0.0740
	(0.0281)	(0.1920)	(0.0706)	(<.0001)	(0.5642)	(0.3443)	(0.9769)	(0.1746)	(0.0001)			
미수/ 선수	-0.598	0.0023	-0.113	-0.005	0.0377	0.00125	-0.0686	0.0143	0.0666	포 함	포 함	0.1591
	(0.0089)	(0.0017)	(0.0976)	(0.0397)	(0.0114)	(0.1320)	(0.0765)	(0.2229)	(0.0181)			
이자 수익	-0.539	-4E-05	-0.0283	-0.001	0.0087	0.00048	0.0124	0.0058	0.002	포 함	포 함	0.0332
	(<.0001)	(0.8744)	(0.2353)	(0.1809)	(0.3880)	(0.1020)	(0.3598)	(0.1612)	(0.8426)			
준비금	-2.018	-0.0004	-0.0005	-0.003	0.0251	-0.0009	0.0417	0.0611	0.0564	포 함	포 함	0.1532
	(<.0001)	(0.4229)	(0.9914)	(0.1032)	(0.2437)	(0.1477)	(0.1493)	(<.0001)	(0.0073)			

	절편	LEV	DEPAS	ROA	MSH	OBODR	BIG	SIZE	GROUP	YD	ID	수정 R^2
대손 관련	-2.203	0.0028	-0.271	-0.007	0.0499	0.00032	-0.245	0.0359	0.255	포	포	0.1401
	(<.0001)	(0.0700)	(0.0577)	(0.1260)	(0.4109)	(0.8541)	(0.0026)	(0.1459)	(<.0001)	함	함	
퇴직 관련	-13.382	-0.0036	-1.193	-0.059	0.0961	-0.009	0.0008	0.372	0.577	포	포	0.1435
	(<.0001)	(0.5526)	(0.0347)	(0.0019)	(0.6884)	(0.1890)	(0.9980)	(0.0001)	(0.0136)	함	함	
고정 자산	-2.003	0.001	-0.155	-0.004	0.0504	0.00037	-0.056	-0.02	0.0747	포	포	0.0843
	(<.0001)	(0.4853)	(0.2390)	(0.3222)	(0.3686)	(0.8164)	(0.4566)	(0.3879)	(0.1713)	함	함	
현가할	-6.714	-0.0023	-0.217	-0.007	0.106	0.00192	-0.301	0.24	0.316	포	포	0.1460
	(<.0001)	(0.2534)	(0.2439)	(0.2493)	(0.1791)	(0.3993)	(0.0047)	(<.0001)	(<.0001)	함	함	
접대/ 기부	-5.736	-0.0016	-0.255	-0.002	0.0607	-0.0015	-0.0118	0.0433	0.178	포	포	0.0564
	(<.0001)	(0.4127)	(0.1494)	(0.7472)	(0.4200)	(0.4962)	(0.9072)	(0.1576)	(0.0155)	함	함	
지급 이자	0.5	0.0005	0.0286	-0.007	-0.0078	-0.0006	-0.0062	-0.022	0.0019	포	포	0.0274
	(0.0316)	(0.5439)	(0.6790)	(0.0017)	(0.7915)	(0.0516)	(0.8753)	(0.0666)	(0.9469)	함	함	

3. 추가분석

기업특성과 세무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회계이익과 세무조정과는 가장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세무조정에 가장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특성은 기업의 수익성이라고 할 것이다. 즉 경영자는 수익성이 좋을 때 즉 높은 회계이익을 보고할 때 그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소득을 감소하고자 할 것이고, 수익성이 나쁠 때 즉 낮은 회계이익을 보고할 때는 과세소득을 다소 증가시켜 보고함으로써 세무조사비용을 감소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인세 유연화 동기가 작용할 것이다. 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분하여 해당 상황에서의 세무조정의 유형을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0>의 분석결과 수익성이 증가한 기업은 가산조정을 줄이고, 차감조정을 늘렸으며, 수익성이 감소한 기업은 가산조정을 늘리고, 차감조정을 감소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즉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 여부, 조정 금액, 조정빈도의 두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시적 가산조정여부의 평균값이 수익성이 감소한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시적 차이 조정 금액 역시 수익성이 감소하는 에서는 양(+)의 가산조정금액을 보였고, 수익성이 증가하는 에서는 음(-)의 차감조정금액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가산조정 빈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감소하는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시적 차감조정 빈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증가하는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값을 보였다. 그리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임을 검증할 수 있었고 모든 예측방향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토대로 세금비용을 절감하

기 위하여 치밀한 세무전략 하에 적극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10〉 수익성에 따른 세무조정 단변량분석 결과

변수	예상크기	이익감소 집단 (1)	이익증가 집단 (2)	t값	p-value
TEMPD	(1) > (2)	0.5767	0.4479	4.04	<.0001
PERMD	(1) > (2)	0.8408	0.822	0.74	0.4565
TEMP_PERMD	(1) > (2)	0.6473	0.5687	2.51	0.0121
TEMP	(1) > (2)	0.0039	-0.001	3.09	0.002
PERM	(1) > (2)	0.0051	0.0049	0.34	0.735
TEMP_PERM	(1) > (2)	0.0081	0.0041	2.26	0.0241
COUNT_TEMP_A	(1) > (2)	4.2191	3.8555	2.87	0.0042
COUNT_TEMP_M	(1) < (2)	3.5283	3.8128	-2.28	0.0226
COUNT_PERM_A	(1) > (2)	2.2408	2.199	0.5	0.6161
COUNT_PERM_M	(1) < (2)	0.5786	0.6414	-1.24	0.214
COUNT_Total_A	(1) > (2)	6.5282	6.0916	2.73	0.0065
COUNT_Total_M	(1) < (2)	4.0738	4.4241	-2.42	0.0158

(1) : 이익감소(기말 ROA-기초 ROA)<0,

(2) : 이익증가(기말 ROA-기초 ROA)>0

TEMPD : 일시적 차이 가산조정=1, 아니면=0 PERMD :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1, 아니면=0

TEMP_PERMD :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1, 아니면=0

TEMP : 일시적 차이 조정 금액

PERM : 영구적 차이 조정금액

TEMP_PERM :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조정금액

COUNT_TEMP_A : 일시적 차이 가산조정빈도 COUNT_TEMP_M : 일시적 차이 차감조정빈도

COUNT_PERM_A : 영구적 차이 가산조정빈도 COUNT_PERM_M : 영구적 차이 차감조정빈도

COUNT_Total_A : 일시적/영구적차이가산조정빈도 COUNT_Total_M : 일시적/영구적차이차감조정빈도

V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의 실제 세무조정 자료에 기초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차이의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파악하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세무조정 항목 중 어떠한 세무조정 항목을 주로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하는가를 파악하고, 해당 개별 세무조정 항목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LEV)의 경우 일시적 가산조정 빈도와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산조정을 많이 함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었다.

둘째, 자본집약도(DEPAS)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가산 조정빈도와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자본집약도가 높을 경우 감가상각비용 인식 및 조세혜택 등을 이용하여 세금비용이 증가하는 가산조정을 억제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익성변수인 ROA와 가산조정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차감조정과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기와 비교하여 일정수준의 과세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 금액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역시 ROA가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수익성이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하여서 수익성과 세무조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기업은 법인세 유연화 동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세금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유집중도는 및 사외이사비율은 기업특성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기업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던 소유집중도가 접대비/기부금 관련 항목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이해상충설에 따라 소유경영자의 사적편의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외이사비율과 지급이자 관련 항목이 음(-)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차입 및 문어발식의 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BIG4소속 감사인 여부와 세무조정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증결과의 오류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특성변수를 다양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무조정 방향에 대한 동기를 찾아보았다는 데 있다. 즉 기업의 세무조정은 기업의 내·외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루

어지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기업전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세무조정에 대한 연구는 단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통한 연구만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정규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역시 세부적인 세무조정사항까지 고려하여 그 정보력을 검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향후 추가적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좀 더 보강하고, 개별 세무조정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보강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진동. 2001.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24집 : 97-115.
- 권순창 · 김형국 · 채종화. 2004. “세무조정과 기업특성 변수의 관련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14권 : 7-30.
- 백원선 · 유재권. 2005. “감사인 유형과 보수주의”. 회계와감사 연구 제41호 : 241-260.
- 신승묘. 1999. “법인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14호 : 371-398.
- 신현걸. 2002.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현황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 169-194.
- 성웅현. 2001. 「Window SAS를 이용한 경영통계 자료분석」. 무역경영사.
- 이군희. 2007.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 이우택. 2001. “조세법률주의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1호 : 99-140.
- 이장희 · 윤병렬. 199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과경영 제9권 제1호 : 255-281.
- 임인환. 2002. “세무조항목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8권 : 313-328.
- 안숙찬. 1996.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 125-152.
-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23-60.
- 전규안. 2004. “조세와 자본구조”. 세무학연구. 제21권 제3호 : 67-96.
- 조정환 · 이원기 · 윤우영. 2000.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2호 : 165-183.
- 정영기. 1997. “특별상각의 이익 및 법인세 유연화 동기와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순천향 사회과학 연구 제3권 제1호 : 51-77.
- 최순재 · 이성구. 2005. “다양한 조세혜택 측정치와 기업특성요인의 실증분석”. 경영논총 제16권 제2호 : 1-22.
- 최명근. 1998. 「법인세법」. 세경사.
- Beatty. R. 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Accounting Review* Vol.64(October) : 693-709.
- Belden S., T. W. Fister and R. W. Knapp. 2005. Dividends and Directors : Do Outsiders Reduce Agency Costs?. *Business and Society Review* Vol. 110(2) : 171-180.
- DeAngel. H. and R. Masulis. 1980. Optimal Capital Structure under Corporate and Personal Tax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 No. 1 : 3-29.
- Fama. E.. 1980.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pp. 288-307.
- Fama. E. and Jensen. M..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6. pp. 301-325.
- Mackie—Mason J. F.. Do Taxes Affect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The Journal of Finance* Vol.45(DEC) : 1471-1493

- Maug E., 1997. Board Directors and Corporate Structure : Alternative Forms of corporate Restructuring.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3. pp.113-139.
- Sholes. M..M. Wolfson. M. Erickson. E. Maydew. and T. Shevlin. 2001.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second edition .
- Stickney.C. P. and V.E.McGee. 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the effect of size. captial intne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Vol. 1(winter) : 125-152.
- Teoh. S. H. and T. J. Wong. 1993. Perceived auditor and the earnings res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68(April) : 346-366.

An Empirical Study on the Tax Reconciliation and Firm Characters

Yun Sung Koh*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and tax reconciliation according to type of corporation in Korea.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ing the 1,369 firm-years data) and the period of analysis is 3 years(2001–2003).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additional temporary difference reconciliation and debt rate. Second, there is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additional/deductible temporary/permanent difference reconciliation and capital-intensive rate. Third, there is negative(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dditional(deductible) reconciliation and ROA. Lastly,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uditor and tax reconciliation.

I look forward to these finding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corporate tax reconciliation.

<Key words> Tax Reconciliation,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 Fulltime Lecturer, Kyonggi University